

2010. 1. 1 부터 여권 업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 지문 채취 및 보관 >

-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2010. 1. 1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 추가 지정 여권사무대행 기관 >

- ◆ 인천(1): 중구
- ◆ 대구(1): 서구
- ◆ 울산(1): 동구
- ◆ 강원(8):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화천군, 양양군
- ◆ 충북(5): 단양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영동군
- ◆ 충남(4):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 ◆ 전북(5):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 ◆ 전남(16): 장흥군, 강진군, 목포시, 나주시, 구례군, 담양군, 곡성군, 함평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 ◆ 경북(15):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의성군, 영양군, 울진군, 예천군, 청송군, 군위군, 칠곡군, 청도군
- ◆ 경남(8):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